

# 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8231/2 /전송3707-8249  
저리부서 : 주택재개발과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2층) 담당 이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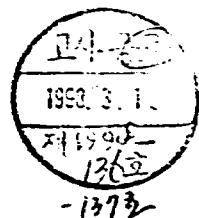
문서번호 주재 58531- 603

시행일자 1998. 3.

(경유) ( 제1안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 금		서 울 특 별 시 장	
보 존			
주 택 국 장	전 결		
주택재개발과장		법무담당관	
재개발계획계장		재개발1계장	
기 안	이 황	재개발2계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와 주민부담 완화 및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개선보고<시장방침4호('98.1.6), 260호('98.2.28)>사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라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게 재 지 : 서울시보

나. 게재내용 : 공고안(별첨)

다. 게재일자 : '98. 3.

-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제2안 )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공고문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라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에 대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안 1부. 끝.

원본 대조필

## 주 택 재 개 발 15 과 장

( 제3안 )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귀국(주무과에서 의견 수합)의 의견을 '98. . 까지 통보하여 주기시 바라며, 상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국·실1-16, 주택기획과, 건축지도과,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서구1-25(재개발관련과), 서본부 1-3.



( 제4안 )

수신 : 수신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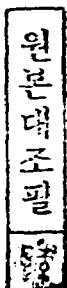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귀 공사(협회)의 의견을 '98.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 제5안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 사업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건설교통부장관(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의회(도시정비위원회).

( 제6안 )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과 입법예고 공공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원본대조필

## 주 택 재 개 발 과 장

( 제7안 )

수신      흥보담당관

제목      컴퓨터 게시판 게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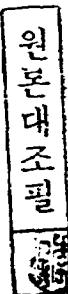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공고안에 대하여 컴퓨터 게시판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주 택 재 개 발 과 장



#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131호

공고일자	1998. 3. 24.	131호
담당자	민자경(한국) 우민자(한국)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및 주택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재개발기본계획법위내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없이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입안하도록 함

나. 각종 신청서류의 간소화

- (1) 구역지정만 또는 사업계획 결정만을 신청하는 경우 : 첨부서류 삭제
- (2) 서울특별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부서와 협의 시 필요서류를 현행 12종에서 6종으로 축소
- (3) 구역지정 동의서에 첨부서류인 동의현황 내역서 삭제
- (4) 사업시행계획서 첨부서류를 3종에서 1종으로 축소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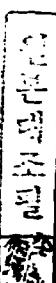
다. 구역지정신청시 기초조사관련내역서 및 신청서류 작성은 구청장이  
하도록 함.

라. 구역지정의 입안시 시·구 관련부서 협의방법을 “관련부서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도록 구체화하고, 조정된 내용을 사업시행인가내  
용에 포함하도록 함

마.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되, 기존 공원시설로 계획되는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잔여 국·공유지와 재개발  
구역안의 비점유 국·공유지는 임대주택부지로 우선 충당하고 남을  
경우에는 공공용시설 부지로 확보도록 함.

바. 잔여 국·공유지와 재개발구역안의 비점유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시행자보유토지로 하는 규정 및 시행자보유토지 관련 규정  
삭제

사. 임대주택부지 대지조성비 산정기준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의 택지비산정기준을 준용토록 함.



- 아. 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부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토록 함.
- 자. 임대주택 매입(분양)계약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시에 체결토록 하고, 중도금 지급시기를 전체공정의 20%, 40%, 60%, 80%로 구분 4회 분할 지급토록 함.
- 차. 임대주택을 타사업구역에 우선 배정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세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카.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서류중 “국공유지의 관리형별 현황 내역서 사본”을 삭제 함.

### 3. 의견 제출

- 가.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8. 4. 2. 가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참조 : 주택재개발과장, 전화: 3707-82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나. 개정 시행규칙안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각 구청 재개발업무 소관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